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여성 1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70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여성 1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16.
3. 회부연월일 : 2025. 6.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총 561만 5천명으로 이중 여성 자영업자 수는 173만 4천명(2025년 4월 기준) 내외임. 여성 자영업자의 76.5%에 달하는 132만 7천명은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에 해당함.

여성 1인 자영업자는 특정한 장소에서 항상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안전상 우려가 있음.

실제로 왁싱숍에 손님들 가장해 들어간 가해자가 여성 사업주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1인 소상공

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여성 1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여성 1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1인 소상공인(여성 또는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여성 1인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여성 1인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u>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u>
--	---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2025년 6월 기준 563만 7천명으로, 여성 자영업자(173만 9천명)의 약 76.1%(132만 4천명)는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¹⁾

한편,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의 노동환경과 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²⁾에 따르면, 경기도 자영업자 2,423명(남성 1,572명, 여성 851명) 중 업무수행 중에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1.09%)이 남성(0.65%)에 비해 높았고, 특히 20~30대 여성 자영업자의 피해 경험은 3.3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성희롱’을 당한 비율은 여성의 경우 1.08%로 나타났으며(남성의 경우 없음), 여성 자영업자 중에서도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피해율(1.37%)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1)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

2) 정형욱,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과 폭력피해경험”,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슈분석」 제223호, 2022.4.

또한, 2024년에 실시된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의 노동환경에 관한 실태조사³⁾에 따르면, 조사대상(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1,169명)의 4.0%는 자영업을 하면서 여성폭력 범죄 피해를 직접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4.6%는 주변의 여성 자영업자들이 여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응답자의 17.4%는 여성 자영업자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19.0%는 여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관련 연구 및 조사에서는 특정한 장소에서 문을 열어두고 영업해야 하는 자영업의 특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인원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이는 자영업자의 안전 측면에서 취약한 환경이라고 보았음.

아울러, 여성 1인 자영업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음.

개정안에 따라 여성 1인 소상공인 현황 조사 및 여성 1인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지급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범죄 등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3) 정형욱,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4.1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로 여성 1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⁴⁾

다만, 개정안 제11조의2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1항에 따른 현황 조사 또는 물품 지급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 1인 소상공인이 폭력범죄 등에 노출되어 있어 보호 필요성이 크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한쪽에 대해서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 우려가 있어, 양성 모두를 포괄하는 ‘1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5

4)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2024년부터 ‘1인 점포 안심경광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